株式會社의 資本金減資에 대한 會計處理에 대한 硏究

全 龍 基*

1. 序 言
2. 資本減少의 意義
3. 資本減少의 方法
4. 資本減少의 節次
5. 資本減少의 効力
6. 償還株式의 償還에 의한 株式消却
7. 利益에 의한 株式消却
8. 資本減少에 따른 会計処理
9. 資本減少의 会計上 問題
10. 結 言

I. 序 言

經済規模의 拡大와 経済発展에 따라 所要되는 巨額의 資本을 調達하기 위해서는 企業의 形態가 株式會社의 形態를 취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理由에서 必然的이라고 하겠다.

1) 資本의 証券化 即 大規模 経営에 必要한 巨額의 資本을 証券発行(株式과 社債)의 方式으로 社會的 資本을 동원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늘 날 高度로 発達된 証券市場의 登場은 資本의 証券化를 더욱 促進하고 있으며, 内資調達政策으로서도 積極勧奨되고 있다.

2) 出資者인 株主의 有限責任制 即 株式의 形態로 証券化된 出資証券을 가진 株主는 株式의 引受価額을 限度로 하여 有限責任을 負担하므로 株主의 財産을 安全하게 維持할 수 있다.

3) 所有와 経営의 分離現象이다. 有能한 経営者는 반드시 株主가 아니라도 되며, 또 株主는 반드시 経営에 参与하지 않고 専門経営人에게 委任経営을 할 수 있다.

이러한 主要特性外에도 株式會社의 制度的 장치인 株主総會, 理事會 및 監事등 業務分担制와 授権資本制度에 의한 資本調達의 容易性등에 의하여 더욱 더 発展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企業形態로 되었다.

이러한 株式會社의 基本財産은 株主들이 出資한 一定한 基金인 出資元金과 株式會社의経営過程에서 생긴 各種 剰餘金으로 構成된다. 이러한 資本金, 資本剰餘金과 利益剰餘金의 総計는 出資者인 株主의 持分(equity)이며, 原則的으로 企業이 償還해야 할 義務가 없기 때문에株式會社의 基本資本으로서 株式會社의 規模와 信用度를 測定하는 基準이 된다. 또한 이러한 出資者인 株主持分(stockholders' equity)은 各種 負債에 대한 担保의 性格을 갖기도 하므로 企業의 規模와 함께 企業의 信用評価에 있어서 重要하게 여기게 된다. 資本的 共同企業의 形態인 株式會社의 出資者 持分을 自己資本(net worth 또는 stockholders' equity)이라고도 하며 이 中에서도 가장 重要視되는 것은 発行株式의 総額인 資本金(paid-in cap-

* 本研究所 研究員, 檀国大 社会科学大 助教授

ital, capital stock 또는 legal capital)이다. 이와 같은 法定資本金은 會社債權者를 保護하는 担保의 基本이 되는 外에 株主들의 經営参与인 議決権行使나 利益配当등 株主権行使의 基準이 되므로 商法에서는 法定資本金(legal capital)을 重要視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法定資本金에 대하여 商法은 다음의 三原則을 要求하고 있다.[1)]

1. 資本確定의 原則

會社信用의 基準이 되는 資本을 確定하도록 하여 資本金은 発行株式의 額面総額이며 株式의 総数는 모두 引受되어야 한다는 要求이다.

2. 資本維持의 原則

流動的인 會社財産을 可及的 資本額에 維持하도록 하여 會社의 実質的인 担保財産의 維持를要求하고 있다.

3. 資本不變의 原則

資本의 減少는 信用의 基準이 低下되므로 一定한 節次와 制限에 따르도록 하여 債権者保護를 위하고 있다. 따라서 確定된 資本을 임의로 変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額面株式制度만을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商法에서는 資本은 原則的으로 発行株式의 額面総額이며 株式으로 分割되어 株式의 額面総額과 資本은 일치하게 된다.

그러나 ① 事業의 縮少에 따라 不必要하게 된 會社資産을 株主에게 返還할 필요가 있거나, ② 또는 缺損의 누적으로 利益配当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缺損을 전보하여 장래 利益 配当을 可能케 하기 위하여 資本의 減少를 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資本을 減少한다는 것은 株式會社의 経済基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同時에 株主持分을 減少시킬 뿐 아니라 債権者保護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資本減少의 形態를 다음의 分類方法에 따라 区分할 수 있겠다.

(1) 會社資産의 減少如否에 따른 分類

① 実質的 減資 : 資本金減少만큼 実質的으로 資産이 減少되는 경우

② 名義的 減資 : 缺損金塡補와 같이 資本金은 減少하지만 資産이 減少하지 않는 경우

(2) 減資의 方法에 따른 分類

① 株金額의 減少 : 一株金額을 減少하는 方法

(가) 一株의 金額中 一部를 還払하는 方法

(나) 一株金額의 一部를 포기시키는 方法

② 株式数의 減少 : 株式数를 減少시키는 方法

(가) 特定株式을 消却하는 株式消却

(나) 数株를 併合하여 数를 減少시키는 株式併合

---

1) 孫珠瓚, 改訂商法(上), 博英社, 1975, pp.441～442.

(3) 資本減少의 財源에 따른 分類

① 資本減少의 규정에 의한 減資 : 資本減少의 節次에 따른 発行株式의 消滅

② 配当할 利益에 의한 減資 : 株主에게 配当可能한 利益으로 株式을 消却

(가) 利益消却

(나) 償還株式의 消却

(4) 資本減少의 強制性 有無에 따른 分類

① 強制消却

② 任意消却

이상의 分類에 따른 資本의 減少 即 法定資本金의 減少(資本減資)에 대한 節次와 이에 따른 會計処理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現在 우리나라 商法은 1962年에 改正된 후 経済与件이 많이 変化되었기 때문에 不適合한 것도 있고 또 새로운 制度의 導入 내지 현상도 있는바 이에 대하여도 會計処理의 관점에서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Ⅱ. 資本減少의 意義

資本減少(reduction of capital)라 함은 會社의 資本을 減少하는 것을 말한다. 資本은 會社가 確保하여야 할 財産額의 基準으로서 物的 會社의 信用의 基礎가 되므로, 資本이 일단 確定된 경우에는 會社는 이를 임의로 減少하여서는 아니된다. 왜냐하면 會社의 基本財産이며 債務에 대한 担保性을 띠고 있는 資本은 債権者保護와 株主利益을 保護하기 위하여서 減少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株式會社의 資本의 三原則인 資本不変의 原則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會社財産이 企業의 実情에 比하여 過剰으로 되거나, 會社에 缺損이 생긴 경우에는 資本減少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商法은 資本減少를 絶対的으로 禁止하지 아니하고, 厳格한 節次를 거쳐 資本을 減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상법 438조, 439조).

資本減少를 해야하는 特別한 事情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原因이 있다. [2]

① 当該企業의 業種·業態의 将來의 豫想등을 考慮할 때 企業規模를 縮少하여 資本을 還給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実質的으로 資産이 社外流出되므로 実質減資 또는 有償減資라고 한다.

② 會社의 缺損状態가 도저히 回復될 수 없는 경우로서 資本金을 減少하여 缺損金을 塡補할 必要性이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의 減資는 會社의 整理라든가 再建을 目的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다. 大部分의 資本減少 即 減資는 이러한 事由로 많이 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実質的으로 資産의 減少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名目上 減資, 形式的 減資 또는 無償減資라

2) 倉田 義雄, 現代株式会社, 同文舘, 1982, p.143.

고 한다.

実質的인 有償減資의 경우는 會社의 規模나 事業이 縮少되어 會社実情에 비하여 會社의 財産이 過剩되어 不必要하게 된 會社財産을 株主에게 返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고, 또한 名目上의 資本減少는 會社에 많은 損失이 생겨 現在의 資本으로는 利益配当을 할 수 없는 경우에 資本을 減少하여 資本과 純財産額(資産-負債)을 일치시켜 将來의 利益配当을 可能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여 진다.[3] 実際에 있어서 名目上의 減資가 보통이나, 때에 따라서는 減資와 同時에 新株発行으로 資金을 調達하여 會社의 再建을 도모하기도 한다.

Ⅲ. 資本減少의 方法

資本減少의 方法에는,

① 各株의 株金額을 減少하는 方法

② 発行株式의 数를 減少하는 方法

③ 이 両者를 併用하는 方法의 세 가지가 있다.

資本減少는 어느 方法에 의하든 株主平等의 原則에 따라야 하며 모든 株式을 平等하게 取扱하여야 한다. 물론 會社가 数種의 株式을 発行한 경우에는 株式의 種類에 따라 資本減少의 方法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損害를 받는 種類의 株主総會(種類 株主総會)의 承認決議가 있어야 한다.[4] (상법 436, 344조)

1. 株金額의 減少에 의하는 方法

株金額의 減少(denomination)에 의하는 方法에는,

① 株金額을 減少하여 그 減少額에 該当하는 것을 株主에게 返還하는 方法(還給)과,

② 株金額의 返還을 하지 아니하고 株主의 損失에서 単純히 株金額을 減少하는 方法이 있다. 前者는 実質上의 資本減少의 경우에 後者는 名義上의 資本減少의 경우에 利用되며 어느 경우에도 資本減少의 決議와 더불어 定款変更決議가 있어야 한다(상법 289 조 1항 4호).

그러나 減少한 株金額은 法定最低額 500 원 以上으로서 均一하여야 한다(상법 329 조 1 항).

商法改正案에서는 法定最低額을 5,000 원으로 하고 있다.

2. 株式數의 減少에 의한 方法

株式数의 減少에 의하는 方法에는 다시 ① 株式의 消却(償却) 即 特定株式을 消滅시키는 方法과,

---

3) 裵鉄世·姜渭斗, 商法講義(Ⅱ), 螢雪出版社, 1981.p.456
孫珠瓚, 前揭書, p.647

4) 裵鉄世·姜渭斗, 前揭書, p.456
孫珠瓚, 前揭書, p.647

② 株式의 併合 即 数個의 株式을 合하여 그것보다 少数의 株式으로 하는 方法이 있다.

(1) 株式의 消却(償却, retirement of shares)

株式의 消却은 原則的으로 資本減少의 규정에 따라야 하나, 例外的으로 定款에 의하여 株主에 配当할 利益으로써 하는 경우에는 資本減少의 규정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상법 343조 1항).

株式의 消却에는 株主의 意思에는 관계없이 會社의 一方的인 行為에 의하여 特定株式을 消滅시키는 強制消却과 會社와 株主間의 任意的 法律行為에 의하여 會社가 株式을 取得하여 이것을 消滅시키는 任意消却이 있다. 強制消却은 추첨, 按分比例 또는 特定한 순서에 의하고, 任意消却은 會社와 株主間의 契約에 의하되 그 契約은 대개 売買(買入消却)이지만 이 밖에 代物辨済·交換·贈与등도 가능하다.

또한 消却에는 株主에게 株式消却의 対価가 提供되고 따라서 実質上의 減資가 되는 有償消却과 株式消却에 대하여 対価가 提供되지 않는 計算上의 減資가 되는 無償消却이 있다. 株主衡平의 견지에서 볼 때에는 強制·無償消却의 경우 보다는 株式併合의 方法이 바람직할 것이다. 結局은 任意·有償의 買入消却이 전형적인 株式消却의 方法이 될 것이다. 會社가 株式의 消却을 위하여 自己株式을 취득하는 것은 會社의 自己株式取得禁止의 예외로서 인정된다(상법 341조 1호). 그리고 거듭 강조되지만 強制消却의 경우에는 물론 任意消却의 경우에도 株主平等의 原則에 따라야 한다.

(2) 株式의 併合(consolidation of shares)

株式의 併合은 1人의 株主에게 속하는 数個의 株式을 합하여 보다 적은 数의 株式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테면 2株를 1株로 하거나 10株를 7株로 하는 것을 말한다. 株式의 併合은 모든 株式에 대하여 一律的으로 행하여 지므로 名義上의 資本減少를 公平하게 하는 데 적합한 方法이다. 株式의 併合의 경우에는 併合에 적당하지 않은 端数株가 생긴다. 例컨데 2株를 1株로 併合하는 경우에 全株主가 偶数株를 가지지 아니한 이상 端株가 생기게 된다. 商法은 端株가 생겨도 株式의 併合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端株에 대하여는 株主平等의 原則에 따라 그에 대하여 発行한 新株를 一括 売却하여 각 株数에 따라 그 代金을 従前의 株主에게 支給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443 조 1항). 端数株의 売却은 競売에 의하여야 하나 法院의 許可를 얻으면 競売以外의 方法에 의하여 株式을 売却할 수 있다(상법 433 조 1항).

端株의 처리에 관한 이 규정은 無記名株式의 경우에 併合을 위하여 會社에 提出公告가 있은후 소정의 期間内에 提出치 못 한 株券에 대하여도 準用한다(상법 444조).

株式을 併合할 경우에는 會社는 3個月以上의 期間을 정하여 株式併合을 한다는 것과 그 期間内의 株券을 會社에 提供할 것을 公告하고 株主와 質権者에 대하여 個別로 通知하여야 한다.

株式의 併合은 原則的으로 위의 公告提出期間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지만 債権者保護節次가 끝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상법 441조).

株式의 併合을 한 경우에는 會社는 旧株券을 회수하고 新株券을 교부하게 되나, 旧株券을 會社에 提供할 수 없는 경우에는 會社는 그 者의 청구에 의하여 3個月以上의 期間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株券에 대한 異議가 있으면 그 期間內에 제출 할 뜻을 公告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新株券을 청구자에게 交付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비용은 청구자가 負担한다(상법 442 조).

Ⅳ. 資本減少의 節次

會社의 資本減少는 다음과 같은 節次에 의하여야 한다.

1. 株主總會의 特別決議

資本은 登記에 의하여 公示될 뿐이고 定款의 記載事項이 아니므로 資本減少를 하는 경우에는 定款変更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資本이 減少되면 그 만큼 株主의 権利가 축소내지 消滅되어 株主의 利益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商法은 資本의 減少는 株主總會의 特別決議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상법 438조 1항, 434조). 다만, 株金額減少의 方法에 의한資本減少의 경우에는 定款変更을 하여야 하므로 資本減少의 特別決議外에 定款変更의 特別決議도 함께 하여야 한다. 資本減少에 관한 결의에 있어서는 減少되는 資本의 額과 資本減少의 方法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439 조 1 항).

資本減少의 결의에서 資本減少의 方法을 정하지 않았거나 資本減少의 方法의 決定을 理事會에 일임하는 경우에는 그 決議는 無効로 된다.[5]

資本減少의 決議가 特別決議의 要件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決議取消의 原因이 된다.

資本減少의 결의를 위한 株主總會의 召集通知書와 公告에는 會議의 目的事項外에 議案의要領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438조, 363조). 議案의 要領이란 実質上의 減資인가 또는 名義上의 減資인가. 資本의 減少額은 얼마며, 어떤 減資方法에 의할 것인가를 記載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內容이 記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株主總會의 召集節次가 法會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決議取消의 原因이 된다.

2. 債權者保護의 節次

実質上의 資本減少의 경우에는 會社資産이 減少하며 名義上의 形式的 減資의 경우에는減資를 하지 않으면 不可能한 利益配当이 可能하게 되어 會社資産의 対外流出이 容易해 진다. 따라서 資本의 減少는 會社資産을 唯一한 物的担保로 하는 會社債権者의 利益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商法은 資本減少의 경우에는 반드시 債権者保護의 節次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즉 會社

5) 裵鉄世, 姜渭斗, 前揭書, p.267

가 資本減少의 決議를 한 때에는 그 決議가 있은 날로부터 2週間內에 貸借対照表(財産目録)을 作成하여야 하고(상법 439조2항, 231조) 또한 會社는 資本減少의 決議를 한 날로부터 2週間內에 2月以上의 期間을 정하여 그 期間內에 會社債權者에 대하여 資本減少에 異議가있으면 異議를 提出할 것을 公告하고, 알고 있는 債權者에게는 個別로 催告하여야 한다(상법 439조2항 232조1항). 알고 있는 債權者란 債權者가 누구인가 그 債權이 어떠한 原因에 의한 것인가 등에 대하여 대체로 會社가 알고 있는 債權者로서 會社가 債權의 存在를 다투고 있더라도 이를 會社가 알고 있는 債權者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또한 金銭債權과 같이 債權의 金額을 알고 있어야 하거나 債權의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會社債權者가 이 期間內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資本減少를 승인한 것으로 보며 또한 會社債權者에 대하여 변제하거나 상당한 担保를 提供하고 또는 會社債權者에게 변제를 받게 할 目的으로 상당한 자산을 신탁회사에 信託하여야 한다(상법 439조 2항, 232조 3항).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資本減少無効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社債權者가 異議를 提出하는 경우에는 社債의 성질상 個別的으로 이의를 제출할 수 없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이 경우에 法院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제출의 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상법 439조3항).

3. 資本減少의 實行

資本減少의 実行節次는 資本減少의 方法에 따라 다르다.

① 株金額의 減少(還給)의 경우에는 會社가 株主에게 그 內容을 通知하면 된다. 그리고 반드시 株券을 會社에 提出하게 하여 株金額을 訂正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現実的으로 株金額을 減少하는 方法은 여러가지 節次가 実用的이지 않기 때문에 잘 利用되고 있지 않다.

② 株式의 任意消却의 경우에는 會社가 株主와의 契約에 의하여 自己株式을 取得하고 이를 失効시켜야 한다(상법 341조1호, 342조).

③ 株式의 強制消却의 경우에는 다음의 株式併合의 경우에 준하여 會社는 特定의 株式을消却하겠다는 뜻과 3月以上의 一定期間內에 株券을 會社에 提出할 것을 公告하고 또 株主名簿에 記載된 株主와 質權者에 대하여 個別的으로 通知하여야 한다(상법 342조2항, 440조).

④ 株式併合의 경우에는 會社는 株式을 併合한다는 뜻과 3月以上의 一定한 期間內에 株券을 會社에 提出할 것을 公告하고 또 株主와 質權者에 대하여는 個別로 通知하여야 한다(상법 440조).

會社는 旧株券을 回収하고 新株券을 交付하여야 한다. 旧株券을 會社에 提出할 수 없는 株主에게는 이들 株主의 請求에 의하여 3月以上의 一定期間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株券에 대한 異議가 있으면 그 期間內에 異議를 提出할 것을 公告하고 異議를 提出한 者가 없으면 그 期間이 경과한 후에 新株券을 청구자에게 交付할 수 있다. 이 경우 公告費用은 請求

者의 負担으로 한다.

株式併合의 경우에 端株가 있을 때에는 會社는 端株를 合하여 경매하여 그 売出代金을 端株에 따라 종전의 株主에 支給하여야 한다. 그러나 法院의 許可를 얻어 경매以外의 方法으로 그 株式을 売出할 수 있다. 端株代金의 支給은 新株券의 交付의 경우와 같다.

無記名株券을 提出期日內에 會社에 提出하지 않은 경우는 端株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444조). 이 株券의 売却方法과 代金支給方法은 경매하거나 法院의 許可로 경매이외方法으로 売却한 후 그 売出代金을 支給한다.

V. 資本減少의 效力[4)]

1. 效力發生時期

資本減少의 効力은 앞에서 説明한 것과 같은 모든 節次 즉 株主総會의 特別決議, 債権者保護의 節次 및 資本減少의 実行등이 終了한 때에 効力이 생긴다. 다만, 株式의 強制消却과 株式의 併合의 경우에는 株券提出期間이 만료한 때에 그 効力이 생기고 또 株券提出期間이 満了한 때까지 債権者 保護의 節次가 終了하지 안했으면 그 終了한 때에 資本減少 의 効力이 생긴다 (상법 343조2, 441조). 資本減少의 効力이 発生하기 前에는 株主総會의特別決議에 의하여 資本減少의 決議를 撤回할 수 있다.

2. 登 記

資本減少는 登記事項의 変更이므로 減資의 効力発生時로부터 本店 所在地는 2週間內에 支店 所在地에서는 3週間內에 그 登記를 하여야 한다(상법 317조, 183조). 이러한 登記는 資本減少의 効力이 発生한 후에 하는 것이며 단순한 公示를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資本減少의 절차는 아니다.

3. 資本減少와 未發行株式數와의 關係

資本減少의 効力이 생기면 資本金이 減少하는 外에,

① 1株金額을 減少하였으면 株金額이 減少하며,

② 株式数를 減少하는 方法에 의하였으면 発行総株式数가 減少한다.

그러나 発行株式의 総数가 減少하여도 會社가 発行할 株式의 総数 即 授権資本数는 변하지 않음은 勿論(상법 289조), 資本減少로 인하여 発行株式의 総数가 減少한만큼 未発行株式의 数가 부활증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現象으로 인하여 授権株式数 = 発行株式数 + 未発行株式数

4) 裵鉄世 · 姜渭斗, 前揭書 p.456. 孫珠瓚, 前揭書 p.647.

의 関係가 成立하지 않게 된다.

例를 들어 授権株式数가 100萬株이고, 発行株式数가 60萬株로서 未発行株式数가 40萬株였으나, 資本減少에 따라 発行株式数를 発行株式数의 1/3인 20萬株로 減少하였다고 할 경우 未発行株式数가 資本減少에 따라 80萬株로 변동되지 않고 그대로 40萬株로 있게 된다. 따라서

授権株式數 100萬株 ≧ 発行株式数 20萬株 + 未発行株式数 40萬株의

不等式이 成立한다.

이와 같은 結果를 초래하는 理由는 発行株式의 総数中 減少된 部分에 관하여는 이미 理事會가 授権에 기하여 株式発行権限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減少된 部分만큼 未発行株式의 数가 부활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이 때에 資本減少에 따라 會社가 発行할 総数가 発行株式総数의 2倍(상법개정안에서는 4倍)를 초과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資本減少로 인하여 資本의 総額, 1株의 金額 또는 発行株式의 総数등의 변동은 登記事項이므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317조3항, 183조).

4. 減資差益의 處理

資本減少가 必要한 金額以上으로 행하여져서 資本減少額 即 資本金減少額이 株式의 消却이나 株金返還에 支給된 金額과 缺損塡補에 充当할 金額을 초과한 경우에는 減資差益이 発生되며 이는 利益配当 등으로 社外流出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資本準備金으로 積立해야 한다. 이 金額은 資本金으로서 구속을 받지는 않지만 利益으로서 配当등 社外流出되는 것이 不合理하기 때문이다.

Ⅵ. 償還株式의 償還에 의한 株式消却

1. 償還株式의 意義

償還株式(redeemable share , callable stock)은 會社가 数種의 株式을 発行하는 경우에 発行時부터 一定期間후에 會社의 利益으로써 消却(償還)하도록 豫定되어 있는 특별한 種類의 株式을 말한다. 우리 나라 商法에서도 이를 認定하고 있으며(상법 345조), 이는 償還의 優先的 内容이 있는 一種의 優先株이다.

償還株式은 會社로서는 一時的 資金需要를 調達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 이를 発行하여 용이하게 資金을 調達할 수 있으므로 資金調達上 편리하고, 株主로서는 一定한 期間後에 額面 또는 그 以上의 価額으로 償還을 받게 되어 社債와 같은 機能을 갖고 있기 때문에 有利한 점이 있다. 이것은 英美會社法上의 制度로서 日本등에서 받아들인 것을 導入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企業経

営에는 積極的으로 活用되지 않고 있는 듯 하다.

원래 會社는 定款의 규정에 의하여 株主에게 配当할 利益으로써 株式을 消却할 수 있으며 (상법 343조 1항 단서), 이 경우에는 株主平等의 原則에 의하여 모든 株式을 均等하게 취급하여야 하나, 이 償還株式은 当初부터 利益에 의하여 消却하는 特別條件이 붙여서 発行된 것이므로 株主平等의 原則에 구애받지 않는다. 利益에 의하여 償還된다는 점에서 利益에 의한 株式消却과 같지만 미리부터 償還條件으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株主平等의 原則의 適用을 받지 않고 消却할 수 있다는 점에 差異가 있다.

그리고 償還株式은 利益配当에 관하여 優先的 内容이 있는 種類의 株式 즉 利益配当優先株에 限한다. 償還株式은 利益配当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미 利益配当의 우선적 지위가 부여된 利益配当優先株에다가 또 償還性이 附加的으로 認定되어 있는 株式이다.

2. 償還株式의 發行

會社가 償還株式을 発行하는 경우에는 定款에 償還価額, 償還期間, 償還方法과 数를 定하여야 하며 이것을 株式請約書에 記載하여야 하고 또 登記時에 登記하여야 한다. 償還価額은 額面으로 定하여도 되고 発行価額으로 定할 수도 있으며 또는 時価로 定할 수도 있다. 償還期間은 株式을 発行한 때로부터 一定期間을 経過한 후의 몇年内로 정한다.

償還方法은 償還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의 選択権을 會社가 갖는 경우도 있고 株主가 갖고 있는 방법도 있다. 또한 회사가 상환선택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會社가 株主의 意思를 묻지 아니하고 一方的으로 상환하는 강제상환과 株主로부터 買入하여 상환하는 任意償還의 방법이 있다. 어느 상환방법에 의하든 간에 상환주주 상호간에 株主平等의 原則은 유지되어야 한다.

3. 償還株式의 償還

償還株式의 償還은 會社의 利益으로써 하여야 하므로 (상법 345조 1항) 즉 配当할 利益이 있는 것을 法定條件으로 한다. 実際로는 償還基金(sinking fund)을 定款으로 정하게 될 것이다. 비록 상환시기가 도래하여도 會社에 利益이 없으면 상환할 수 없다. 그러나 利益은 当該年度의 利益에 限한 것이 아니고 任意積立金등 社内留保利益도 무방하므로 事前에 상환기금을 積立하는 것이 適合하다.

會社가 任意買入償還에 의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會社는 상환주식을 매입한 후 지체없이 이의 失効節次를 밟아야 하고 (自己株式의 取得과 処分에 관한 상법 341조와 342조), 이에 의하여 상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會社가 強制償環에 의하여 償還하는 경우에는 償還條項에 다른 定함이 없으면 株式併合의 경우에 準하여 3月以上의 一定期間内에 株券을 會社에 提出할 것을 公告하고 株主에 通知하여 그 期間이 만료한 때에 償還의 効力이 発生한다(商法 343,440,441條)

會社가 償還株式을 償還하면 그 償還株式은 消滅하고 発行株式総数가 그만큼 減少된다. 따라서

會社는 資本金 減少를 変更登記하여야 한다.

商法上 資本減少의 節次에 의하지 않는 資本減少는 인정되지 않고 또 현행 상법에 있어서 資本과 株式間에는 필연적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會社가 償還株式을 상환하여도 이로써 會社의 資本(法定資本金)이 감소되지 않는다고[5] 한다.

會社가 상환주식을 상환한 경우에 상환된 상환주식수만큼 未発行株式数가 增加하고 會社는 다시 그 만큼 新株를 再発行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異論이 있다. 多数説에 의하면 償還株式의 発行으로 그 株式에 대한 理事會의 発行権限이 이미 행사되었으므로 상환으로 株式消滅되면 그 주식에 대하여 다시 발행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會社는 상환으로 消滅된 주식의 数만큼 다시 주식을 再発行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는 反対로 상환주식이 消滅된 때에는 상환주식의 수만큼 未発行株式数가 증가되어 発行授権의 범위가 回復되므로 會社는 償還消滅된 株式数만큼 다시 新株를 발행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日本의 判例는 상환으로 消滅된 주식에 대하여 再発行을 인정하게 되면 무한의 발행권한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어 株主의 利益을 해하게 될 것이므로 株式의 再発行을 認定하지 않는 多数説의 입장이 妥当하다고 한다.

이러한 論議는 定款에 償還으로 消滅된 株式의 数만큼 株式의 再発行을 認定하는 明示的 규정이 없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定款에 償還으로 消滅된 株式의 数만큼 株式의 再発行을 認定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株主가 그 消滅된 株式数만큼 再発行을 豫期할 수 있으므로 이를 有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商法은 償還株式의 消却은 資本減少의 節次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償還株式의 消却의 結果는 資本(資本金)이 減少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6]

그러나 會計學 및 財務的 側面에서 보면 엄연한 株式数의 減少로 資本金이 減少된 것이며 特히 額面株式制度下에서 資本金과 発行株式数가 관련을 맺지 못한다면 利害関係者에게 큰 混乱을 줄 것으로 본다.

Ⅶ. 利益에 의한 株式消却

1. 利益消却의 意義

商法 第343條 1項 但書에 의하면 定款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株主에게 配当할 利益으로써 株式을 消却하는 경우에는 資本減少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도 株式을 消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株主에 配当할 利益을 財源으로 株式을 消却하는 것을 利益消却이라 한다.

---

5) 裵鉄世, 姜渭斗, 前掲書 p.267.

6) 孫珠瓚, 前掲書 p.511

2. 利益消却의 要件

(1) 定款의 規定

定款에 株式을 消却할 수 있다는 뜻과 消却의 方法등에 관하여 具体的 규정이 있는 경우에 限하여 利益消却을 할 수 있다. 利益消却은 株主의 權利를 消滅시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은 定款은 原始 定款 또는 総株主의 同意로써 변경한 定款이어야 한다고 한다.

(2) 配当可能利益의 存在

利益消却은 株主에게 配当할 利益으로써 株式을 消却하는 것이므로 株主에게 配当할 利益이 없는 경우에는 利益消却을 할 수 없다. 株主에게 配当할 利益 即 利益配当可能利益이란 貸借対照表上의 純財産額(総資産-総負債 = 資本総計)에서 資本金, 法定準備金 其他 決算期에積立하여야 할 利益準備金등의 金額을 差減한 残額을 말한다. 따라서 法定準備金을 財源으로 하는 消却은 허용되지 않으며, 任意準備金이라도 定款이나 株主総會의 決議 또는 其他法令에 의하여 積立한 것은 그 拘束을 해제한 후가 아니면 株式의 消却에 充当하지 못한다.

(3) 株式契約書의 記載 및 登記

定款에 利益消却에 관한 事項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株式請約書에도 記載되어야 하며 登記도 하여야 한다.

3. 利益消却의 方法

株式을 強制消却할 경우에는 會社는 3月 以上의 期間을 정하여 株式을 消却하겠다는 뜻과 그 期間内에 株券을 會社에 提出할 것을 公告하고 또 株主名簿에 記載된 株主와 質權者에게 個別로 그 通知를 하여야 한다. 特히 株主의 意思를 불문하고 會社의 一方的 行為에 의한 強制消却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는 보통 按分比例나 추첨 또는 일정한 順序에 의한다.

任意消却의 경우에는 會社와 株主間의 自由로운 契約에 의하여 會社가 自己株式을 취득하였다가 消却하는 方法으로서 보통 売買에 의하나 기타 代物辨済 또는 交換등에 의할 경우도 있다. 그리고 株式의 消却은 대체로 會社가 消却株式에 대하여 対価를 支給하는 有償消却에 의하지만 対価를 支給하지 않는 無償消却에 의할 수도 있다. 株式의 消却은 강제소각이나 임의소각이나 또는 有償消却이든 無償消却이든 모두 株主平等의 原則에 의하여 均等하게 하여야 한다. 資本減少의 규정에 의하여 株式消却하는 경우는 강제소각과 무상소각에 의하지만 利益消却은보통 任意消却과 有償消却에 의하고 경우에 따라 강제소각에 의하기도 한다.

4. 利益消却의 效力

(1) 消却의 効力発生時期

강제소각의 경우에는 會社는 3月以上의 주권제출기간을 정하여 通知하면 同 期間이 만료하면 消却의 効力이 생긴다. 任意消却의 경우에는 會社가 一時에 自己株式을 취득하여 実効節次를 취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때에 消却効力이 생긴다. 株式消却이 있는 때에는 変更登記를하여야 한다.

(2) 株式消却이 資本에 미치는 효과

消却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 株式에 대하여 株主의 地位 消滅하고 强制有償消却의 경우에는 消却対価請求権으로 전환하게 된다. 利益消却의 경우에 資本은 減少하지 않는 다고 한다.

(3) 株式消却이 授権資本에 미치는 영향

주식의 消却이 利益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때는 利益에 의한 償還株式의 消却 때와 같이 未発行株式数가 그 부분만큼 未発行状態로 回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株式의 消却으로 인하여 当該 株式은 消滅되었으므로 다시 이것을 未発行株式으로 再発行할 수 없다고 본다.[7]

Ⅷ. 資本減少에 따른 會計處理

앞에서도 言及하였듯이 資本減少의 形態와 方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資本減少에 따른 會計的 処理를 아래와 같이 区別하여 考察하기로 한다.

① 資本減少의 규정에 의한 資本의 減少

② 配当可能利益에 의한 株式의 消却

(1) 償還株式의 償還

(2) 株式의 利益消却

1. 資本減少의 규정에 의한 資本의 減少(減資)

法定資本金이 減少되는 法定減資節次로서 ① 株式金額의 減少에 의한 資本減少와, ② 株式数의 減少에 의한 資本減少로 나누어 會計処理問題를 살펴 보기로 한다.

(1) 株式金額의 減少에 의한 減資

가. 株式金額의 還払에 의한 実質的 減資의 경우

例를 들어 甲株式會社는 事業縮少를 위하여 減資하기로 하고 額面金額 1株当 100,000 원인 発行株式 100株에 대하여 一律的으로 額面金額을 1株当 50,000 원으로 減少(切下)하여 還払하기로 하였다. 資本減少의 効力이 発生하면 다음과 같이 會計処理한다.

① 資本金 5,000,000 未支給金(減資代金) 5,000,000

② 註記 또는 貸借対照表에 1株当金額을 100,000원에서 50,000원으로 修正表示하며

7) 孫珠瓚, 前揭書 p.543
裵鉄世, 姜渭斗, 前揭書 p.308

授權株式数와 発行株式数는 変動이 없다.

③ 株主에 減資代金還払時에는,

未支給金(減資代金)	5,000,000	現金預金	5,000,000

으로 會計処理한다.

④ 減資登記를 하여 法定資本金이 正式으로 減少되며 株主平等의 原則에 하자가 없도록 되어야 한다.

⑤ 만약 株式金額의 減少에 있어 株価가 額面価를 上廻하는 경우는 額面価로 減資할 수 없기 때문에 額面価額을 超過하는 超過還払額이 있게 된다.

例를 들어 額面価額 株当 50,000 원씩 切下할 경우 還払은 株当 70,000 원을 支給한다면,

資 本 金	5,000,000	未支給金(減資代金)	7,000,000
減資差損	2,000,000		

⑥ 한편 切下되는 額面価額以下인 40,000 원을 1株当 還払을 한다면,

資 本 金	5,000,000	未支給金(減資代金)	4,000,000
		減資差益 (資本準備金)	1,000,000

로 會計処理될 것이다.

이 때 減資差益이 発生을 하면 資本剰餘金인 資本準備金의 増加로 処理할 수 있으나 額面超過還払의 경우 생기는 減資差損의 処理問題가 発生한다. 여기에 대하여는 우리 나라 商法이나 企業會計基準에 아무런 규정에 없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에 一括해서 論하기로 한다.

⑦ 新株式発行費 1,000원을 현금 支給하다.

株式発行費	1,000	現金預金	1,000

나. 株式額面金額을 一部 포기 또는 切捨하는 形式的 減資의 경우

例를 들어 乙株式會社가 缺損金塡補의 目的으로 額面金額 1株当 100,000원의 発行株式 100株를 額面金額을 1株当 50,000원으로 切捨하기로 하고 未処理缺損金 4,000,000원을 塡補하는 데 充当하는 特別決議를 하여 効力이 発生되었다고 하자.

① 資 本 金	5,000,000	未処理缺損金	4,000,000
		減資差益 (資本準備金)	1,000,000

② 앞의 例와 같이 貸借対照表의 授権株式数와 発行株式数는 변동이 없으나 1株当金額은 100,000원에서 50,000 원으로 修正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減資差損은 생기지 않으며, 減資差益은 缺損塡補額보다 資本金의 減少가 큰 경우에 発生한다.

(2) 株式数의 減少에 의한 資本減少

이 경우는 1株当金額은 不変하고 다만 発行株式数가 減少되므로서 資本金이 減少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方法이 있다.

① 株式의 消却 : 有償消却과 無償消却

② 株式의 併合 :

이 경우 株主平等의 原則에 따라서 消却分을 確定해야 한다.

株式数의 減少에 의한 減資의 경우에는 端株가 発生된다. 端株에 대하여는 商法에 明文規定이 있다. 그리고 減資에 의하여 発行株式数가 減少하게 되며 이 減資節次에 따른 発行株式数의 減少는 利益에 의한 株式의 消却과는 달리 未発行株式数가 回復된다는 点이다. 即 発行株式数가 減少한 만큼 授権株式中 未発行株式数가 増加한다.

(가) 無償減資에 의한 株式消却의 경우

株式의 提出을 받아 按分比例나 추첨등에 의하여 強制消却을 하는 경우에는 大部分 缺損塡補의 目的이며 無償減資이므로 다음과 같이 會計処理될 것이다.

例를 들어 丙 株式會社에서 1株当額面 500원의 発行株式 50,000 株를 未処理缺損金 20,000,000 塡補를 위하여 無償減資하였다고 하자. 授権株式数는 200,000 株, 発行株式数는 150,000 株였다.

① 資 本 金	25,000,000	未処理缺損金	20,000,000
		減資差益 (資本準備金)	5,000,000

② 貸借対照表上에 発行株式数를 150,000 株에서 100,000 株로 減少시키며, 1株當金額은 不變한다. 따라서 未發行株式數가 株式數減少된 分만큼 增加한다.

(나) 有償減資에 의한 株式消却 (買入消却)

株式数를 減少하여 減資를 하는 경우로서 契約에 의한 任意消却의 方法으로 가장 一般的인 形態가 買入消却이다. 이 때에는 減資를 目的으로 自己株式을 取得하게 된다.

例를 들어 丁 株式會社는 1株当額面価額 500 원의 授権株式 200,000 株中에서 100,000株를 発行하였다. 移越缺損金 (未処理缺損金) 4,100,000 원을 塡補할 目的으로 発行株式 20,000 株를 買入消却하기로 減資決議를 하였다. 株式買入価格은 1株当 270 원이고 減資差益의 一部를 缺損金塡補하고 残額은 資本準備金으로 対替하였다.

① 自己株式買入 :

自己株式	5,400,000	現金預金	5,400,000

② 株式消却 :

資 本 金	10,000,000	自己株式	5,400,000
		減資差益	4,600,000

③ 移越缺損金塡補

減資差益	4,600,000	未処理缺損金	4,100,000
		資本準備金	500,000

④ 貸借対照表의 発行株式数를 100,000株에서 20,000株가 減少된 80,000 株로 修正하게 되며 未発行株式数는 120,000 株로 增加된다.

이 때 授権株式数는 発行株式数의 2倍(商法改正案은 4倍)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상법 289조 2항, 437조), 資本減少의 규정에 의할 경우는 例外的으로 인정되고 있다.[8]

(다) 株式併合에 의한 資本減少

株式併合에 의한 発行株式数를 減少할 경우에 생기는 併合에 不適合한 部分에 대한 端株에대하여는 現行 商法內容은 앞에서 説明한 바와 같이 경매등 기타방법에 의하면 된다. 商法改正案에서는 証券去來所의 時勢있는 株式은 去來所를 통하여 売却하고 去來所의 시세없는 株式은 法院의 許可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設例) 戊株式會社는 額面価額 500원의 授権株式数 200,000株 発行株式 100,000 株인 會社로서 未処理缺損金 22,000,000을 塡補할 目的으로 株式 2株를 1株로 併合하여 減資키로 決議하였다. 減資差益은 缺損塡補하고 残額은 資本準備金으로 対替(留保)한다.

① 資本減資(50,000株 × @ 500원)

資 本 金	25,000,000	減資差益	25,000,000

② 缺損塡補

減資差益	25,000,000	未処理缺損金	22,000,000
		資本準備金	3,000,000

③ 貸借対照表에 発行株式数가 100,000株에서 50,000株로 減少되며 이로 因하여 未発行株式数는 150,000 株로 增加하며 授権株式数는 発行株式数의 4倍가 되나 이는 例外的으로 인정된다고 한다.

2. 配當可能利益에 의한 株式의 消却

株主에게 配当可能利益에 의하여 発行株式을 消却(償却)하는 点에 있어서 償還株式의 償還에 의한 株式消却이나 利益消却이 同一하다. 그러나 償還株式은 発行時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株主平等의 原則의 例外로 인정되지만, 利益消却은 商法 343條 但書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것으로 株主平等의 原則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差異点이다.

또한 資本減少의 규정에 의한 減資와 다른 点은 資本減少의 규정에 의한 減資의 경우는 発行株式数가 減少한 만큼 未発行株式数가 增加하는 데 反하여 配当可能利益에 의한 株式消却은 償

8) 裵鉄世, 姜渭斗, 前掲書. p.456.

還株式이든 利益에 의한 株式消却이든 모두 発行株式数가 減少하드라도 未発行株式数가 増加할 수 없다는 立場에 차이가 있다. 一部 學者들은 授権株式으로서 再発行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資本減少의 규정에 의한 減資는 登記事項인 데 反하여 利益에 의한 株式消却은 資本金減少登記事項이 아니므로 資本減少登記를 할 수 없다는 데에 差異가 있다.

(1) 償還株式의 償還

償還株式은 商法345條에 의하여 発行 当初부터 會社의 利益에 의하여 償還이 豫定되어 있는 特別種類株式이다. 따라서 株式의 償還에 의하여 株式数는 減少하지만 法定減資節次에 따른 減資처럼 法定資本金이 減少되지 않는다. 따라서 株式과 資本이 일치하지 않고 株式과 資本의 関係가 断切된다. 즉 発行株式数에 1株当額面価額을 乘하면 資本金과 일치하지 않는 断切이 생긴다.

〈設例〉 A 株式會社는 定款에 優先株式으로서 상환주식 10,000株, 額面価額 1株当 500원을 発行하였다.(授権株式数 200,000株 / 普通発行株式数 100,000株)

① 償還株式発行時 :

現金預金	5,000,000	資本金	5,000,000

② 利益에 의하여 1株当 650원에 全量買入償還(株式消却)하다.

未処分利益剰餘金	6,500,000	現金預金	6,500,000

또는

買入償還株式	6,500,000	現金預金	6,500,000
未処分利益剰餘金	6,500,000	買入償還株式	6,500,000

이 경우 〃買入償還株式〃計定은 一種의 経過計定으로서 貸借対照表에는 表示되지 않으나 株式의 買入償還의 경위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이러한 會計処理가 보다 合理的이라고 생각된다.[9)]

위의 會計処理에서 알 수 있듯이 償還株式의 発行으로 増加된 法定資本金은 동 株式이 償還되어 消却되었음에도 資本金減少가 안 될 뿐 아니라 発行流動株式数(outstanding shares) 는 償還株式数만큼 減少되어 貸借対照表에 다음과 같이 表示될 것이다.

貸 借 對 照 表 (一部)

区 分	상환주식상환前		상환주식상환後		備 考
1. 資本金					
(1) 授権株式数 (1株当金額 500원)	200,000株		200,000株		償還優先株式은 상환되어 없지만 資本金은 그대로 存在하고 있음.
(2) 発行株式数					
1. 普通株式	100,000株	50,000,000	100,000株	50,000,000	
2. 償還株式	10,000株	5,000,000	-	5,000,000	
資本金合計		55,000,000		55,000,000	

9) 倉田義雄, 前掲書 p.155.

③ 償還株式의 償還資金을 마련하기 위하여 株式償還基金을 每年 利益金中에서 利益処分하여 積立하고 別途基金으로 運用할 수 있다. 이는 減債基金과 같은 會計処理가 된다.

上記 設例에서 株式償還預金이 4,500,000원 別途로 運用되고 있으며, 同 償還株式의 株式償還積立金이 未処分利益金에서 処分되어 積立된 것이 5,000,000원 있다면 다음과 같은會計処理가 있게 된다.

일반예금으로 대체 :	現金預金	4,500,000	株式償還基金預金	4,500,000
적극적적립금사용후 대체 :	주식상환적립금	5,000,000	別途積立金 (또는 未処分利益金)	5,000,000

(2) 株式의 利益消却

普通株式으로서 定款의 定하는 바에 의하여 株主에게 配当할 利益으로써 株式을 消却할수 있다. 이것은 有償으로 普通株式을 償還(消却)하는 것이지만 資本金의 減少가 생기지 않는 点에서 株式의 有償減資(買入償却)와 다르다고 하겠다. 株式의 利益消却도 償還株式과 마찬가지로 資本金이 減少되지 않으며 未発行株式数가 回復되지 않는 点과 상환자원이 이익이라는 点이 같다.

〈 設例 〉 B 株式會社는 授権株式数 200,000株 1株当金額 500원 発行株式数 100,000株中에서 定款의 규정에 의하여 1株当 600원씩에 10,000株를 配当可能利益으로 買入償還하기로 決議되어 利益에 의하여 株式을 消却하다.

① 買入消却하다 :

未処分利益剰餘金	6,000,000	現金預金	6,000,000

또는

株式利益消却	6,000,000	現金預金	6,000,000
未処分利益剰餘金	6,000,000	株式利益消却	6,000,000

이 後者의 〃株式利益消却〃이란 計定은 상환주식의 〃買入償還株式〃과 같은 経過対照計定으로 株式消却의 경위를 表示할 수 있으므로 合理的이고 明白한 内容을 表示해 준다.

이 경우에도 利益金中에서 償還資源으로 積立하였다가 同基金으로 株式을 消却할 수 있다.이에 대한 會計処理는 상환주식의 경우와 同一하다.

株式의 利益消却도 償還株式처럼 資本과 株式의 斷切現象이 나타난다. 利益消却이 貸借對照表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貸 借 對 照 表 (一部)

区 分	利益消却前		利益消却後		備 考
1. 資 本 金					
(1) 授権株式数 (1株当金額 500원)	200,000株		200,000株		発行株式数는 減少하였으나 資本金은 不變임.
(2) 発行株式数					
1. 普通株式	100,000株	50,000,000	90,000株	50,000,000	
資本金合計		50,000,000		50,000,000	

Ⅸ. 資本減少의 會計上 問題

1. 減資差損[10]

株式을 買入消却하는 境遇에 1株當 額面價額以上의 價額으로 買入하여 消却할 때에는 減資差損이 생긴다. 無償減資를 할 경우에는 減資差損이 생기지 않는다. 減資差損에 대하여는 會計學的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處理方法이 있을 수 있다.

첫째, 營業外費用이나 金額이 클 때는 特別損失로 處理하는 費用處理 方法이다. 減資差損을 一種의 財務費用으로 보는 見解이다. 그러나 資本金의 減少는 借入金의 償換과 性質이 다르므로 當期의 費用으로 處理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社債와 株式의 接近현상에 따라 轉換社債와 償還株式이 登場하였지만 어디까지나 資本去來에 따라 發生한 差異는 資本剩餘金으로 보는 것이 合理的이다. 따라서 當期損失로 보려는 것은 妥當性이 없다.

둘째, 資本剩餘金의 控除項目이라고 보는 方法이다. 資本剩餘金中에서도 減資差益에 直接對應하여 相計處理하는 方法. 資本剩餘金에 負擔시키는 處理法이 나뉘어 진다. 日本의 「商法과 企業會計原則과의 調整에 관한 意見書」에서는 "減資差損은 營業上損金도 아니므로 減資差損에서 形成된 資本準備金이 있는 경우는 直接 이것에서 控除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여 資本剩餘金控除法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減資差益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해석이 不分明하다. 어떻든 商法등의 취지로 볼 때 資本準備金에서 控除하는 것이 妥當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商法에서는 減資差損을 減資差益에서 控除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지 않다. 減資差益은 資本準備金의 一部로서 資本準備金은 缺損塡補나 資本轉入以外에는 使用이 制限돼 있기 때문에 商法改正이 없는 限 直接對應하여 控除할 수 없다.

셋째, 利益剩餘金에서 控除하는 方法이다. 減資差損은 株主가 株式을 會社에 賣却함으로써 株主地位를 잃게 되는 者에 주는 特別配當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方法이 會計學的으로 妥當하다고 해석된다. 1株當 額面資本金을 초과하는 金額을 還拂하는 것은 留保利益이 그만큼 (配當할 수 있었던 留保利益)社內에 있기 때문이다. 稅法도 이러한 立場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減資差損은 利益剩餘金이나 未處分利益剩餘金에 負擔시키는 것이 妥當性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企業會計基準이나 商法에서도 減資差損에 대한 규정을 明白히 할 必要가 있다고 하겠다.

2. 株式과 資本의 關係斷切

우리나라와 같이 額面株式制度에서는 法定資本金은 發行株式數에 1株當 金額을 乘한 것으로 同一

10) 中村 忠, 新版 株式会社会計の基礎, 白桃書房 1982, p.152.
倉田 義雄, 前揭書, p.147.

視하게 된다. 또한 授權資本制度下에서는 株主總會에서 理事會에 委任한 授權株式數內에서 理事會가 株式을 發行하여 資本金을 調達하는 制度로서, 授權株式數= 發行株式數 + 未發行株式數 의 算式이 成立되며, 發行株式數 × 1株當額面金額=資本金의 關係가 成立된다. 그러나 利益에 의한 株式消却(實質的 資本減少)과 償還株式의 償還(消却)은 모두 發行株式數가 減少된다. 그러나 授權株式中에서 理事會가 發行하였던 發行權이 行使된 株式은 消却에 의하여 減少됐더라도 未發行株式數가 增加(回復)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資本金도 減少시킬 수 없어 (減資登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株式과 資本間에 算式關係가 斷切된다.

利益에 의한 株式消却:

消 却 前	消 却 後
授權株式數 = 未發行株式數 + 發行株式數 (A)	授權株式數 > 未發行株式數 + 發行株式數 B = A - 消却株式數 (B)
資 本 金 = 發行株式數 (A) × 1株當額面金額	資 本 金 = 發行株式數 (B) × 1株當額面金額 B = A - 消却株式數

따라서 앞의 配當可能利益에 의한 株式消却(減資)後의 貸借對照表에서 보듯이 發行株式數와 資本金間에는 同等關係가 두절되므로 企業의 利害關係者들에게 混括을 초래하게 되며 發行可能한 授權株式數를 別途表示해야 하며 消却된 發行株式數에 대한 別途表示가 있어야 所期의 目的에 一致한 公示效果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株式과 資本과의 關係斷切현상은 日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制度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므로 우리나라의 實情과는 다른 立場에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와 相異한 資本制度의 採擇으로는,

첫째, 無額面株式의 發行으로 發行株式數와 資本金(또는 表示資本金)의 關係가 斷切되었다.

둘째, 株式數의 減少없이 資本金만 減少시키는 制度. 資本金이 額面總額보다 많은 경우 資本金만 減少시킨다.

셋째, 法定準備金의 資本轉入時에 株式을 發行하지 않으므로 資本金과 株式數와의 直接的 關係가 斷切된다. 이러한 불가피한 여러 原因으로 인하여 日本에서는 이미 株式과 資本의 關係가 斷切된 것을 財務諸表利用者들이 理解하고 있어 株式數와 資本金關係를 重要視하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철저한 額面資本制度인 實情에서 이러한 株式과 資本의 關係斷切이 財務諸表利用上에 장애가 될 수도 있으며, 株式數의 表示를 할 경우 混亂을 줄 것으로 보인다.

3. 利益에 의한 株式消却制의 惡用

配當可能利益으로 株式을 消却할 경우 正當한 利益配當決議에 의하는 代身에 편법으로 株式을 消却하는 方法에 의하여 資本減資를 할 경우 利益의 社外流出決議없이 利益配當이 될 수 있으며 法定資本金이 減少되지 않아 까다로운 減資節次없이 實質的인 資本減少가 可能하다.

特히 外國人合作企業의 경우에 利益配當金의 管理, 資本減資의 統制, 利益配當에 대한 課稅(擬制配當에 대한 課稅)등에 편법으로 惡用될 수 있고, 財務諸表利用者에게 이러한 內容의 公示가 未備한 狀態에 있다.

또한 資産再評價, 法定準備金의 資本轉入으로 資本增資後 利益에 의한 減資節次없이 株式消却에 의하여 資本의 減少가 될 경우 企業의 資本充實의 原則에 어긋나는 結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겠다.

X. 結　　言

繼續企業에 있어서는 資本의 增加가 一般的이지만 特別한 事情이 있는 경우에는 資本金을 減少하게 된다. 企業의 現實問題는 資本增加가 重要한 問題로 取扱되고 있음은 資本의 增資는 活發한데 比하여 資本의 減少問題는 現實的으로 發生도 많지 않으며,또 減資할 때에도 여러가지 편리한 편법을 利用하고 있어 큰 問題로 提起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資本減資에 대한 問題가 빈번히 發生되는 것이 아니라 關心이 적은 듯하며,또 現實問題도 이 分野에 대한 研究를 要請하지 않고 있는 듯 하다. 商法改正에 있어서 無額面株式制의 導入, 類種의 株式을 發行할 경우의 各種準備金과 積立金의 株式種別 調整問題에 대한 研究가 있어야 할 것이다.

資本減少와 關聯된 것으로 企業會計基準 또는 商法에서 分明히 整理해야 할 問題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減資差損의 會計處理

② 株式과 資本의 關係斷切에 대한 財務諸表의 公示方法

③ 株式併合에 따른 株式發行費의 會計處理

④ 數種의 株式發行時의 減資할 株式의 減資差損益의 區分計算과 會計處理

이러한 問題에 대한 研究가 보다 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